

학교법인 동서학원

2019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7 인	2 인

1. 일 시 : 2019년 6월 27일(목), 오후2:00~3:25,

(회의소집 통보일: 2019년 6월 19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7명) : 박동순, 임효진, 추만석, 양상백,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1명) : 장제국
- 감사(0명) :

4. 회의안건

(1) 심의 안건

1) 법인 정관변경(안) 심의 건

2) 동서대학교

- ①교원인사규정, 수당규정 개정(안) 심의 건
- ②2019 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3) 부산디지털대학교

- ①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②교원인사규정, 수당규정 개정(안) 심의 건

4) 경남정보대학교

- ①2019-2학기 경남정보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 ②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심의 건

5) ①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과 다누림노인주간보호센터의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②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 2019년 제3차 추경 및 수정사업계획(안) 변경 심의

③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및 분관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안) 심의 건

(2) 보고 사항

5. 회의내용 :

(1)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됨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2) 이사장은 이번 회의안건은 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 요청한 심의 건이라고 설명하다

6. 토의 및 결의:

①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과 다누림노인주간보호센터의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②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 2019년 제3차 추경 및 수정사업계획(안) 변경 심의

③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및 분관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안) 심의 건

(1) 이사장은 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및 분관 그리고 다누림주간노인보호센터 관련 회의 안건에 대하여 대해 심주영 사상구노인복지관 부장에게 자세히 설명토록 요청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장	이사	이사

(2) 심주영 부장은 사상구노인복지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력 증가와 외부공모사업 지원으로 인한 지정후원금 증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누림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자 출석일수 증가와 일자리안정자금 보조사업 수입증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와 세부내용을 배부된 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다.

또한 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의 평생교육원사업 등 7개의 사업신설에 따른 수입증가를 반영하여 편성된 2019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이어서 본관과 분관의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 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3) 추만석이사가 자료를 검토한 후,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보호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분관, 다누림노인주간보호센터의 추가경정예산 안과 분관 수정사업계획(안),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다.

(4) 임효진이사가 추만석이사의 동의에 재청하고, 강정호이사가 삼청하니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의 뜻을 표하니 가결되다.

(5) 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총 세입·세출이 본예산 대비 135,820,462원이 증액되어 3,957,406,541원으로 편성된 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과 총 세입·세출이 본예산 대비 2,536,841원이 증액되어 215,268,631원으로 편성된 다누림노인주간보호센터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총 세입·세출이 본예산 대비 2,504,315원이 증액되어 536,311,760원으로 편성된 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의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6)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오병태이사가 이사장, 양상백, 이순걸이 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이순걸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2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9. 6. 27.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사장 박동순

이사 임효진

이사 오병태

이사 추만석

이사 양상백

이사 이순걸

이사 강정호

감사 양한석

감사 문승엽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 사상구노인복지관 -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원)

세 입				세 출			
과목(관)	2019년예산(A)	1차 추경예산(B)	증감(B-A)	과목(관)	2019년예산(A)	1차 추경예산(B)	증감(B-A)
총 계	3,821,586,079	3,957,406,541	135,820,462	총 계	3,821,586,079	3,957,406,541	135,820,462
사업 수입	156,334,000	155,465,000	-869,000	사무 비	633,848,785	700,126,477	66,277,692
보조금수입	3,505,109,800	3,598,856,000	93,746,200	재산조성비	17,000,000	20,649,180	3,649,180
후원금수입	56,853,000	95,039,920	38,186,920	사업 비	3,158,528,620	3,214,567,623	56,039,003
전 입 금	50,000,000	50,000,000	0	잡 지 출	100,000	3,000,000	2,900,000
이 월 금	45,926,440	53,140,415	7,213,975	예비비 및 기타	12,108,674	19,063,261	6,954,587
잡 수 입	7,362,839	4,905,206	-2,457,633				

2. 다누리노인주간보호센터 -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원)

세 입				세 출			
과목(관)	2019년예산(B)	1차 추경예산(B)	증감(B-A)	과목(관)	2019년예산(B)	1차 추경예산(B)	증감(B-A)
총 계	212,731,790	215,268,631	2,536,841	총 계	212,731,790	215,268,631	2,536,841
임소자부담금수입	30,752,700	33,736,570	2,983,870	인 건 비	169,523,558	170,424,261	900,703
요양급여수입	157,504,960	154,113,700	-3,391,260	재 산 조 성 비	2,600,000	6,942,000	4,342,000
이 월 금	9,124,130	0	-9,124,130	사 업 비	22,716,410	20,720,510	-1,995,900
잡 수 입	2,950,000	11,718,361	8,768,361	잡 지 출	200,000	200,000	0
적립금및준비금	12,400,000	15,700,000	3,300,000	예비비 및 기타	1,691,822	1,281,860	-409,962
				적립금 및 준비금	16,000,000	15,700,000	-300,000
				차년도이월금	0	0	0

3. 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 - 2019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원)

세 입				세 출			
과목(관)	2019년 2차예산(A)	2019년 3차예산(A)	증감(B-A)	과목(관)	2019년 2차예산(A)	2019년 3차예산(A)	증감(B-A)
총 계	533,807,445	536,311,760	2,504,315	총 계	533,807,445	536,311,760	2,504,315
사업 수입	41,371,000	44,157,000	34,339,000	사무 비	288,737,000	289,328,310	591,310
보조금수입	443,575,000	401,186,000	-11,190,000	재산조성비	11,344,800	11,344,800	0
후 원 금	4,660,000	4,200,000	-4,060,000	사 업 비	195,479,060	201,200,280	5,721,220
전 입 금	25,000,000	25,000,000	0	잡 지 출	100,000	100,000	0
이 월 금	17,531,815	17,531,815	0	예비비 및 기타	7,858,394	8,511,470	653,076
잡 수 입	1,669,630	1,707,945	38,315	차년도이월금	30,288,191	25,826,900	-4,461,291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수근	이사	장상희	이사	이수경
------------	-----	-----	----	-----	----	-----

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 2019년 수정사업계획(안)

○ 기존 단위사업 신규프로그램 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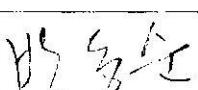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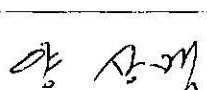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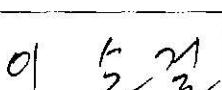
단위사업	프로그램
평생교육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교육 : 한글초급, 한글중급 ◎ 교양교육 : 한자 초급A/B, 노인대학 ◎ 정보화교육 : 스마트폰활용 초급A/B, 스마트폰활용 고급반 ◎ 외국어교육 : 영어초급, <u>영어알파벳반(신설)</u>, 일본어초급, 중국어 초급
취미여가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능활동 : 노래교실, 실버방송댄스, 댄스스포츠기초, 댄스스포츠중급, 라인댄스, 웨딩댄스, 오카리나, <u>뜨개질교실(신설)</u>, 미술공예(신설), 우쿨렐레(신설), 뮤지컬반(신설) ◎ 동아리활동 : 당구동아리, 바둑동아리 ◎ 실버문화 한마당
건강증진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교실 : 유연성강화A반, 기초체력강화 A/B, 실버로빅A/B, 웃go놀go떠들go, 기체조, <u>유연성강화B반(신설)</u>, <u>우리춤체조(신설)</u> ◎ 건강교육 : 100세 건강교실 ◎ 보건연계서비스 ◎ 체력단련 ◎ 안마서비스
지역복지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버이날 행사 ◎ 노인의날 행사 ◎ <u>지역주민 화합 행사(신설)</u>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신잔치 ◎ <u>아와나들이(참여자 증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 복지관 이용자들의 신규 개설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설 및 증원하여 사업 진행 ▷ 평생교육지원사업 1개반 신설로 총 12개 프로그램, 취미여가지원사업 4개반 신설로 총 15개 프로그램, 건강증진지원사업 2개반 신설로 총 11개 프로그램 운영 ▷ 지역협력사업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더불어 지역주민들과의 화합행사를 마련, 세대 간 소통의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지역주민화합 행사’를 기획함 ▷ 하반기 아와나들이 대상자 수를 증원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참여기회 제공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사상구노인복지관(본관 및 분관) 운영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1 운영규정 제4장 직원 및 분장사무</p> <p>제16조(직원) <생략> 제17조(직원의 구분과 임명) <생략> 제18조(업무분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후원회, 자문 및 운영위원회</p> <p>제20조(자문 및 운영위원회) 노인복지관 운영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보조금 지침에 의하여 전문위원 및 운영위원은 예산의 허락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 운영규정 제4장 직원 및 분장사무</p> <p>제16조(직원) <삭제> 제17조(직원의 구분과 임명) <삭제> 제18조(업무분장)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후원회, 자문 및 운영위원회</p> <p>제20조(자문 및 운영위원회) ----- ----- 단,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예산의 허락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3 조직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p> <p>제4조(조직) ① <생략> ② <생략> ③ 시설의 조직구성은 <별표 1>과 같다.<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3 조직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p> <p>제4조(조직) ① <생략> ② <생략> ③ ----- 단, 조직구성은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설장이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업무분장</p> <p>제13조(부서별 업무내용) 각 부서별 담당업무별 분장내용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업무분장</p> <p>제13조(부서별 업무내용) ----- ----- 단, 부서별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4 운영위원회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추가></p> <p>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4 운영위원회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② -----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회의</p> <p>제10조(수당 등) 위원, 운영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회의</p> <p>제10조(수당 등)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기사민 대	이시신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현 행	개 정 안
<p>5. 복무관리 규정 제2장 복무</p> <p>제1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제17조(시간외 근무의 구분 및 적용) ⑥ <산설></p> <p>제21조(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 6>에 의한 근무상황기록부에 시간, 용무 및 행선지 등을 기입하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외출은 구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p> <p>제52조(공가) 시설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직원교육훈련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p>8. <신설> 9. <신설></p> <p>제53조(경조휴가)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휴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 휴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⑤ <신설></p> <p>제56조(포상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장을 받은 때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p>② 직원이 장기근속 5년 경과 시마다 시설장은 별도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p>	<p>5. 복무관리 규정 제2장 복무</p> <p>제1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삭제></p> <p>제17조(시간외 근무의 구분 및 적용) ⑥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p> <p>제21조(외출)————— 외근 및 연가 관리대장에—————</p> <p>제52조(공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업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4 <삭제>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6 <삭제> 7 <생략>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9. 소속 직능단체에서 실시하는 국내·외 연수에 참가할 때 <p>제5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삭제> ⑤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제56조(포상휴가) ① <삭제> ② 근속 기간 5년 이상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의거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p>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50조 제1항의 경조휴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직원복리후생</p> <p>제98조(기타후생) ① 생략 ② 시설의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설장의 재가를 통해 이용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 감면 해 줄 수 있다.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⑧ <신설></p> <p><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 </thead> <tbody> <tr> <td>출산</td><td>배우자</td><td>5</td></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5	<p>제59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직원복리후생</p> <p>제98조(기타후생) ① 생략 ② <삭제> ③ 설추석 명절시 소정의 선물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 경조사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직원 생일을 기념하여 소정의 선물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직원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직원 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업무 중 상해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p> <p><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 </thead> <tbody> <tr> <td>출산</td><td>배우자</td><td>10</td></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5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p style="text-align: center;">6. 급여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당</p> <p>제29조(지급기준) 수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년도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주기></p>	<p style="text-align: center;">6. 급여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당</p> <p>제29조(지급기준) ----- -----. 단,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정한 수당 이외의 수당은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9. 인사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인사위원회</p> <p>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장계의결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시 공무원, 변호사 등 외부인사 1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p> <p>1. 위원장 : 시설의 장 2. 위원 :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와 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 이상 3. 간사 : 위원장이 위촉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9. 인사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인사위원회</p> <p>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 2. 위원 : 중간관리자 1인 이상과 시설운영위원 중 1인 이상 3. 간사 : -----</p>												
<p style="text-align: center;">13. 재무회계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회계</p> <p>제43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13. 재무회계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회계</p> <p>제43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 ----- ----- 1. <삭제></p>												

간사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사상구노인복지관(본관 및 분관) 취업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사유

- 운영규정 중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및 기타 조문 전면 재정비
- 2018년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16일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1년에 1회 이상 실시

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개정 내용

제5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기관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키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히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H. 6. 1	이사	양상희	이사	이조경
------------	-----	---------	----	-----	----	-----

- 제5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3. 기타 조문 재정비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양상재	이사	이도경
------------	-----	-----	----	-----	----	-----